

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2855
결재일자	2016.4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희망복지지원담당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
박호혜	강정주	박성도	04/04 박형중	
협 조				

**「3無2有 마을복지건강공동체 구현」을 위한
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운영·사업비 지원계획**

2016 . 4.

**복지문화국
복지정책과**

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운영·사업비 지원 계획

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과 더불어 동(洞)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(洞) 중심 사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지원 근거

-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【보건복지부, 2016】
- 2016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
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-15010(2015.12.31.)호】
- 마을복지 「통합사례관리」 운영 계획 【복지정책과-1228(2016.03.15.)호】

II 지원 개요

- 지원목적 :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
- 지원기간 : 2016. 4월 ~ 12월
- 지원대상 : 20개 동 주민센터
- 지원내용
 - 운영비 : 사례관리 회의 운영 경비, 교육훈련비(강사비), 홍보경비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(단, 식대 등 업무추진비 지급 불가)
 - 사업비 : 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, 생활지원비, 교육훈련비 지원, 기타 사업비 등 (※ 서비스연계대상 지급 제외)

□ 지원절차

- 운영비 : 區 → 洞주민센터에 분기별 교부 ▶ 洞 집행, 정산
- 사업비 : 洞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업비지급대상자 선정 후 의뢰 ▶ 區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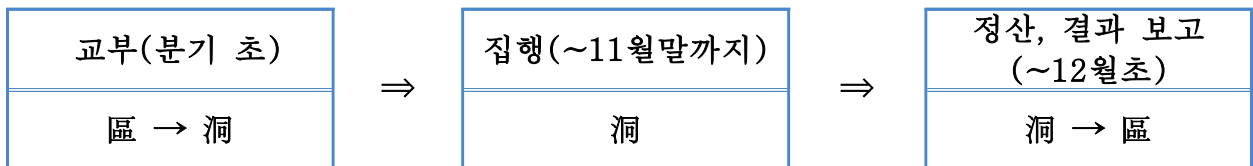
Ⅲ 세부지원계획

1 사례관리 운영비

- 지원기간 : 2016. 4월 ~ 12월
- 지원내용

구 분	내 용
사례관리 회의경비	-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¹⁾ 에게 회의수당 지급 - 회의수당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가능
교육훈련비 (강사비 · 자문료)	-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사례관리 교육, 슈퍼비전 제공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지급
홍보비	- 사례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등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 가능 (단,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 불가) ※ 홍보비 사용 예시 : 동영상 · 전광판 ·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, 포스터, 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, 인쇄물 · 홍보물 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등

□ 지원절차



□ 교부내역 : 동별 3,000천원

(단위:천원)

행정동	총계	분기별				비고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20개동	60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동별 750×4분기 = 3,000

1) 대학(교)교수, 변호사, 전문의(의사), 세무사 등

2 사례관리 사업비

□ 지원기간 : 2016. 4월 ~ 12월

□ 지원대상

- 洞 사례관리대상자 중 ①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② 신청이후 지원까지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가구 ③ 그 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

□ 지원내용 : 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

구 분	내 용
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,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, 알콜중독·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의 경우 진료비용 중 의료비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 (긴급지원사업 기준 적합시 긴급지원사업 우선 지원) -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는 진단비, 의료비 등 지원 불가 <p>※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</p>
생활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욕창방지,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 구입비, 단전·단수,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 등 지원 (※ 월세 : 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)
교육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(취업)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- 이·미용, 피부미용, 조리(한식, 양식, 일식 등), 제과제빵, 전자정보 처리, 영양보호사 자격 취득,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
기타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례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 계획을 사전 수립, 동장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

♣ 가구당 생활지원비, 진단비 교육비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

(단,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동장의 사전 결재하에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)

□ 지원절차

○ 현물지원



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결정

- 동 사례회의 후 사업비 지원 결정 또는 사례회의 결과 보고(동장결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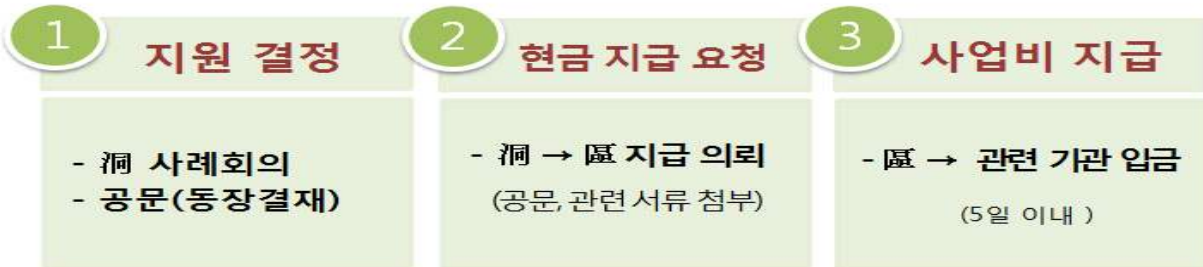
② 현물 지원

- 물품 구매(동주민센터 법인카드 결제)하여 대상자 지원

③ 사업비 지급

- 익월5일까지 구청에 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의뢰
 - ▶ 사업비 지원 결정 공문(사례회의 결과 보고), 사례회의록, 구매영수증, 물품수령증 첨부
-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

○ 현금지원



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결정

- 동 사례회의 후 사업비 지원 결정 또는 사례회의 결과 보고(동장결재)

② 현금 지급 요청(수시)

- 구청으로 사업비 지급요청 공문 의뢰
 - ▶ 사업비 지원 결정 공문(사례회의 결과 보고), 사례회의록, 관련 증빙서류 첨부

예시

- ★ 의료비 지원 : 의료비 청구서, 병원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
- ★ 월세체납금 지원 : 월세계약서, 월세체납확인서, 집주인통장사본

③ 사업비 지급

- 구청에서 관련기관(병원, 학원 등)계좌로 입금처리(5일 이내)

□ 배정내역 : 동별 3,000천원

(단위:천원)

행정동	총계	분기별				비고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20개동	60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동별 750×4분기 = 3,000

【 유 의 사 항 】

- ◆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, 다른 공적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
- 수급자, 차상위,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
(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)
- ◆ 대상자에게 생활비,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급여 제공 불가
- ◆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기관(병원, 학원 등)에 직접 지급하고,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
- ◆ 사업비 지급은 사례관리 대상자만 지급,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급 제외
- ◆ 기타 사항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「통합사례관리 집행 지침」 참고 (p123)

IV 소 요 예 산

□ 동 중심 사례관리 운영비 소요 예산 : 총 120,000천원
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사업명	소요액 (단위:천원)
계						120,000
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	저소득 주민지원	동 중심 사례관리 운영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사례관리회의 운영비,홍보비 등 (3,000천원×20개동)	60,000
			일반보상금 (301)	사회보장적 수혜금 (01)	동 사례관리 대상자지원 (3,000천원×20개동)	60,000

V 행정 사항

□ 복지정책과

○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운영비 교부 매 분기 초

※ '16년도 1, 2분기 운영비 4월 초 교부 예정

○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지급 의뢰시(5일이내)

□ 동 주민센터

○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운영비 집행 철저 분기별 결과 보고

○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시 공문 지급 의뢰 (수시)

- 지급요청내역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지원내용	지급계좌			지원액	비고
			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		

끝.